

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조례안

검 토 보 고

I. 회부경위

1. 의안번호 : 제1393호
2. 발 의 자 : 이종배 의원
3. 발의일자 : 2023. 10. 16.
4. 회부일자 : 2023. 10. 23.

II. 제안이유

1. 서울특별시 관내 학교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에서 배우고 성장하며 올바른 학습권을 보장받도록 하려는 것임.

III. 주요내용

1. 목적 및 정의(안 제1조~제2조).
2.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교육감의 책무(안 제3조).

3. 교육환경보호구역 관리 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 규정(안 제4조~제5조).

4. 포상 규정(안 제6조).

IV. 참고사항

1. 관계법령 : 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」, 「초·중등교육법」

2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.

3. 기 타

○ 입법예고(2023. 10. 26. ~ 10. 30.) 결과 : 의견 없음.

V. 검토 의견(수석전문위원 김창범)

1.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

- 동 조례안은 2023년 10월 16일 이종배 의원에 의해 의안번호 제1393호로 발의되어 2023년 10월 23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.
- 동 조례안은 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서울시 관내 학교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.

2. 주요 검토의견

가. 제정 취지에 대한 검토

- 국회는 2016년 2월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학교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」을 제정하였으며 서울시교육청은 이러한 법률 시행에 따라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.

[표] 서울시교육청 교육환경 보호 관련 사업

연번	사업 내용	2024년도 예산안 편성 예산(천원)
1	교육환경보호구역 및 교육환경평가시스템 관리용역	322,161
2	교육환경보호제도 홍보 및 연수	4,815
3	교육환경평가제도 법률 자문	660
4	시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 운영	26,920
5	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 운영	121,200

- 한편 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¹⁾ 및 「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환경보호구역 관리 등에 관한 규칙」²⁾에서는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학교장의 역할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바

동 조례안이 단위학교의 교육환경 보호에 대한 교육감의 책무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사업추진을 통해 학생이 보다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은 의미있는 입법조치라고 사료됩니다.

나. 조례안의 체계와 주요 조문별 검토

1) 조례안의 체계

- 동 조례안은 총칙 규정으로 목적, 정의, 책무(안 제1조~제3조)를 규정하였고 본칙 규정으로 교육환경보호구역 관리 지원(안 제4조), 협력체계 구축(안 제5조), 포상(안 제6조)을 규정하여 총 6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
- 동 조례안은 전반적으로 조문 간 구성과 체계, 내용 등에 있어서 「자치법규 입법실무」 및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을 준수하고 있다는 점에서 조례 제정에 따른 별도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.

2) 책무(안 제3조) 및 교육환경보호구역 관리 지원(안 제4조)에 대한 검토

- 안 제3조에서는 교육감이 학교의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학교의 교육환경 보호에 필요한 행·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

1) 제24조(보호구역의 관리) ① 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의 보호구역 내 교육환경에 대한 현황 조사 및 보호구역 내 금지행위의 방지 등을 위한 계도 등(이하 이 조에서 “관리”라 한다)을 한다. 다만, 학교가 개교하기 전까지의 관리는 보호구역을 설정한 자가 한다.

2) 제2조(교육환경보호구역에 대한 점검) 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6조에 따라 학교의 장은 연 2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교육지원청의 교육장(이하 “교육장”이라 한다) 및 학교의 장은 수시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.

1. 교육환경보호구역 관리상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
2. 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9조를 위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

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.

○ 그리고 안 제4조에서는 교육감이 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4조³⁾에 따른 학교장의 활동이 원활히 수행되도록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.

○ 이와 관련하여 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」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, 지방자치단체 및 학교장은 동법에 규정된 절차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⁴⁾

안 제3조 및 제4조에서 교육감이 학교의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상위법에 명시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구체화함으로써 관련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측면에서 별도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.

3)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검토(안 제5조)

○ 안 제5조에서는 교육감이 학교의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 서울시, 자치구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.

○ 이와 관련하여 ‘2023년도 서울시교육청 교육환경보호 시행계획’을

3) 제24조(보호구역의 관리) ① 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의 보호구역 내 교육환경에 대한 현황 조사 및 보호구역 내 금지행위의 방지 등을 위한 계도 등(이하 이 조에서 “관리”라 한다)을 한다. 다만, 학교가 개교하기 전까지의 관리는 보호구역을 설정한 자가 한다.

② 학교 간에 보호구역이 서로 중복되는 경우 그 중복된 보호구역에 대한 관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장이 한다.

1. 상·하급 학교 간에 보호구역이 서로 중복되는 경우에는 하급학교. 다만, 하급학교가 유치원인 경우에는 그 상급학교로 한다.

2. 같은 급의 학교 간에 보호구역이 서로 중복될 경우에는 학생 수가 많은 학교

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학교 간에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절대보호구역과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상대보호구역이 서로 중복되는 경우 그 중복된 보호구역에 대한 관리는 절대보호구역이 설정된 학교의 장이 한다.

4) 제3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
② 국가, 지방자치단체, 학교의 장 및 사업시행자는 교육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살펴보면 서울시교육청은 세부 추진 과제 중 하나로 ‘교육환경보호 정책 협력 및 네트워크 강화’를 설정하고, ① 정보 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중앙부처 관계 위원회에 위원(교육환경보호위원회 소속) 추천 ② 교육환경평가 승인사항에 대한 이행도모를 위한 인·허가 기관과의 협업 ③ 교육환경평가 관계기관 소속 위원회와의 협력 ④ 학교 주변 유해시설 단속을 위한 관계기관과의 협력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.

- 동 조례안 제5조는 향후 서울시교육청이 기존의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보다 견고하게 구축함으로써 안전한 교육환경의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바람직한 입법으로 생각됩니다.

다. 교육청 의견에 대한 검토

-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동 조례안에 대해 ① 현재 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」 및 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이 동 조례안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② 동법에는 조례 위임 조항이 없으며 ③ 법령 및 교육부 지침에 따라 동 조례안의 내용을 시행하고 있다는 의견을 제출 하였습니다(행정관리담당관-15379, 2023. 10. 27.).

- 그러나 동 조례안의 주 내용은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단위학교의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이에 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,

상위법령에서 동 조례안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동 사업에 관한 별도의 조례를 마련함으로써 해당 사업이 동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별도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.

- 이상으로 「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조례안」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.

의안심사팀장	정진국 02) 2180-8263	입법조사관	김한수 02) 2180-8269
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